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4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5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III. 경영참고사항	6
1. 사업의 개요	6
가. 업계의 현황	6
나. 회사의 현황	1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5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15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18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선임	30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32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33
<input type="checkbox"/>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4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37
가. 제출 개요	37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37
※ 참고사항	3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 년 4월 2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공구우먼
대 표 이 사 : 김주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525
 (전 화) 1588-0903
 (홈페이지) <http://09women.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신현구
 (전 화) 02-6411-5206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22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주주분 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법 제 542조의4 및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발행주 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공고로 갈음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05월 13일(수요일) 오전 09시 30분

2. 장 소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4F 중교육실]

3. 회의 목적 사항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0명)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자) 이기운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자) 민은기 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자) 김익희 선임의 건
 -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자) 진광용 선임의 건
 -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자) 도윤상 선임의 건
 -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자) 이병두 선임의 건
 - 제2-7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자) 박수중 선임의 건
 - 제2-8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이상훈 선임의 건
 - 제2-9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김도훈 선임의 건
 - 제2-10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박치욱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김태우 선임의 건 (1명)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20억)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규정 개정의 건
- 제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도입하기로 하 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 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 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

을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인터넷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5월 3일(일) 09시 ~ 2026년 5월 12일(화) 17시까지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마지막날은 오후 5시 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서는 (1)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 (2) 전자투표 이용, (3) 대리인을 대신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주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2)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경우 :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참조

(3)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및 인감날인)

- 주주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

- 대리인(참석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 위임에 관한 내용, 위임인의 인감날인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 및 주주의결권의 적극 행사를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를 활용하는것을 권장합니다.

나.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경비절감을 위하여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으며, 탄소 중립 및 환경을 위한, '중이 없는 주주총회'로 진행 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6년 4월 28일

주식회사 공구우먼

대표이사 김 주 영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김동하 (출석률: 100%)	이동명 (출석률: 100%)
			찬 반 여부	
1	2026-02-12	(1)결의사항 제 1호 의안: 제 20기 2025년도 (가)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현금배당의 건 (2)보고사항 제 1호 의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와 평가 보고	찬성	찬성
2	2026-03-12	제 1호 의안: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 2호 의안: 2025년 (가)결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도입 및 시행의 건	찬성	찬성
3	2026-03-31	제 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4	2026-04-03	제 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 2호 의안: 기준일 결정의 건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1,000,000,000	6,000,000	3,000,000	-

※ 상기 인원수는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수입입니다.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 지급총액은 2026년 1월~3월까지의 지급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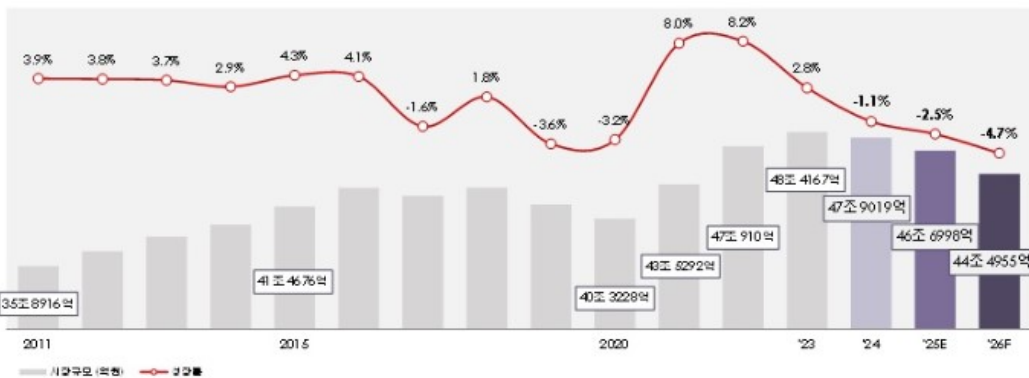
가. 업계의 현황

(1) 시장의 특성

(가) 목표시장

당사는 플러스 사이즈 여성 패션·의류 제품을 온라인 중심으로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플러스 사이즈 여성이라는 명확한 수요층을 대상으로 니즈를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러스 사이즈 패션 시장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인구통계학적 자료와 다음의 국내 패션 시장 규모 통계를 토대로 플러스 사이즈 패션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처:2026 Preview 한국 패션산업 빅데이터 트렌드

(*1) 트렌드리서치 한국패션소비시장 2025년 조사결과 및 한국 패션시장 트렌드 각년호 자료 포함

(*2) 트렌드리서치 시장규모 추정모델에 의한 전망치 (2026.01.10 기준)

(*3) 패션시장규모는 의류 전품목과 가방 신발품목을 포함, 단 유니폼(교복), 섬유제품목, 수선 등은 제외, 외국인 구매와 해외에서의 구매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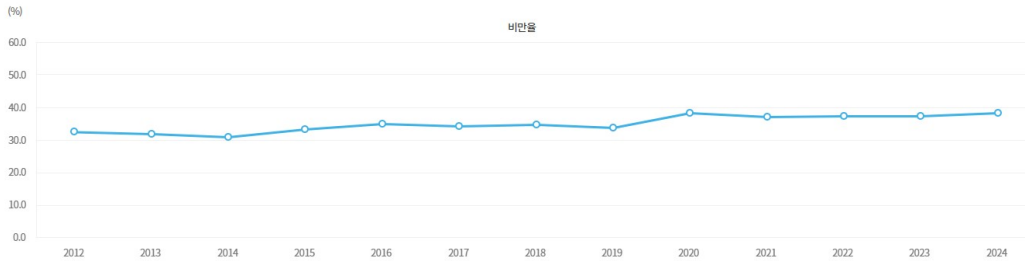
2025년 기준 한국 패션 시장 규모는 약 50.9조원(전년 대비 2.7% 성장)으로 전망되며,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2025년 추계인구 기준, 국내 20~40대 여성 인구는 약 1,038만명으로 당사의 주요 타겟을 구성합니다. 이를 국내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인구 비율 26.9%로 세분화하면, 20~40대 플러스 사이즈 여성 패션 시장은 약 2.8조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질병관리청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성인 비만율은 35.2%로 전년 대비 0.8%p 상승하였으며, 20~30대 여성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 타겟 시장의 잠재 고객층 확대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성별 및 연령집단별 비만율

[단위 :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32.4	31.8	30.9	33.2	34.8	34.1	34.6	33.8	38.3	37.1	37.2	37.2	38.1
성	남자	36.3	37.7	37.8	39.7	42.2	41.6	42.8	41.8	48.0	46.3	47.7	45.6	48.8
	여자	28.0	25.1	23.3	25.9	26.4	25.6	25.5	25.0	27.7	26.9	25.7	27.8	26.2
연령집단	19-29세	22.4	22.4	23.9	23.5	27.2	29.4	26.9	27.6	32.6	28.6	31.1	33.6	33.5
	30-39세	32.5	33.2	31.8	32.9	34.2	33.4	37.8	34.9	41.6	39.4	39.8	39.8	37.9
	40-49세	39.2	33.7	31.1	35.6	39.0	35.3	36.8	35.6	39.0	42.9	40.7	37.7	44.1
	50-59세	34.0	37.3	35.4	38.3	36.1	38.0	35.2	36.5	40.2	36.8	39.2	40.5	38.0
	60-69세	38.5	36.3	36.8	40.1	40.2	38.0	36.8	37.3	41.1	40.6	36.1	35.4	37.5
	70세 이상	31.1	33.8	32.1	37.4	37.5	34.7	38.0	34.3	35.3	33.5	35.0	34.6	35.3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자료 : 질병관리청, 2024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3차년도(2024)

(*1) 비만율 = (만 19세 이상 체질량지수(BMI, kg/m²) 25 이상인 응답자수 ÷ 만 19세이상 조사대상자수) × 100.

(*2) 전체 및 성별 자료는 2005년 추계인구 기준으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임.

해당 목표 시장을 단순 비만율 만으로 명확하게 정의 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인구 체형의 지속적인 변화와 식습관과 생활 환경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 당사 사업의 타겟 수요층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시장 규모 및 전망

(가) 온라인 패션 시장

온라인 패션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 보고서 (2019년 ~ 2024년)에 따르면 온라인 패션 시장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8.6%로, 2024년 국내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그 성장세가 둔화 되었지만 시장 규모는 21조원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출처: 통계청, 「2024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

(나) 플러스 사이즈 여성 패션 시장

앞서 서술하였듯이, 국내 플러스 사이즈 패션 시장의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으며, 이에 따라 국내 플러스 사이즈 패션 시장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파악하긴 어렵지만 당사 및 경쟁사들의 매출 성장과 국내외 발표자료를 토대로 매출 확장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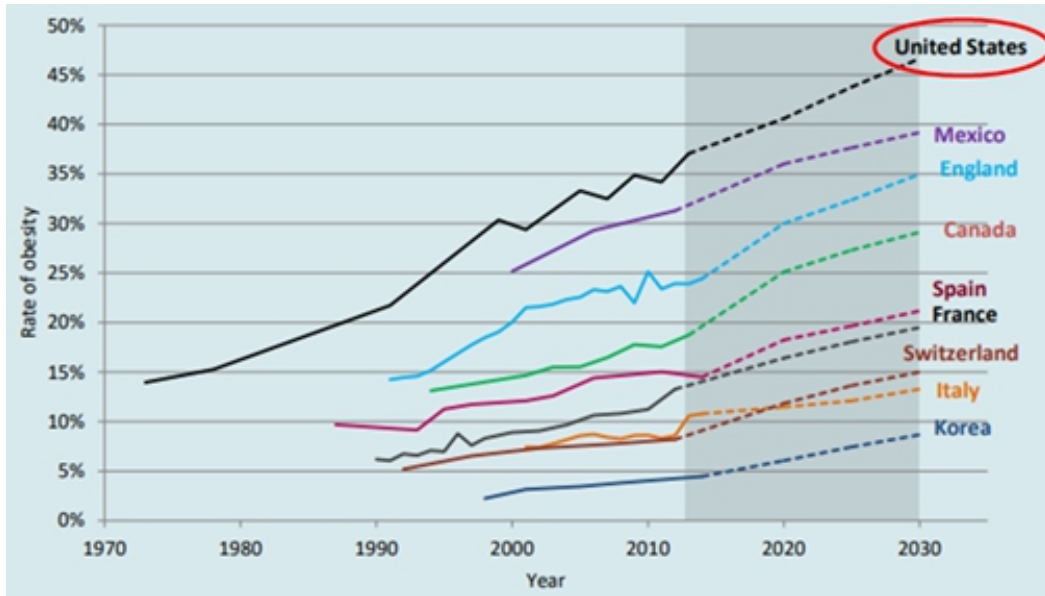
2017년 미국 패션 업계를 필두로 시작 된 '자기 몸 긍정주의'는 2019년 대에 들어 전세계적 트렌드를 넘어 현재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획일화 된 미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자는 자기 몸 긍정주의는 국내·외적으로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처: Marie claire 2021. 07월호 '자기 몸 긍정주의'
 사진 상단: PARADE, 사진 하단: H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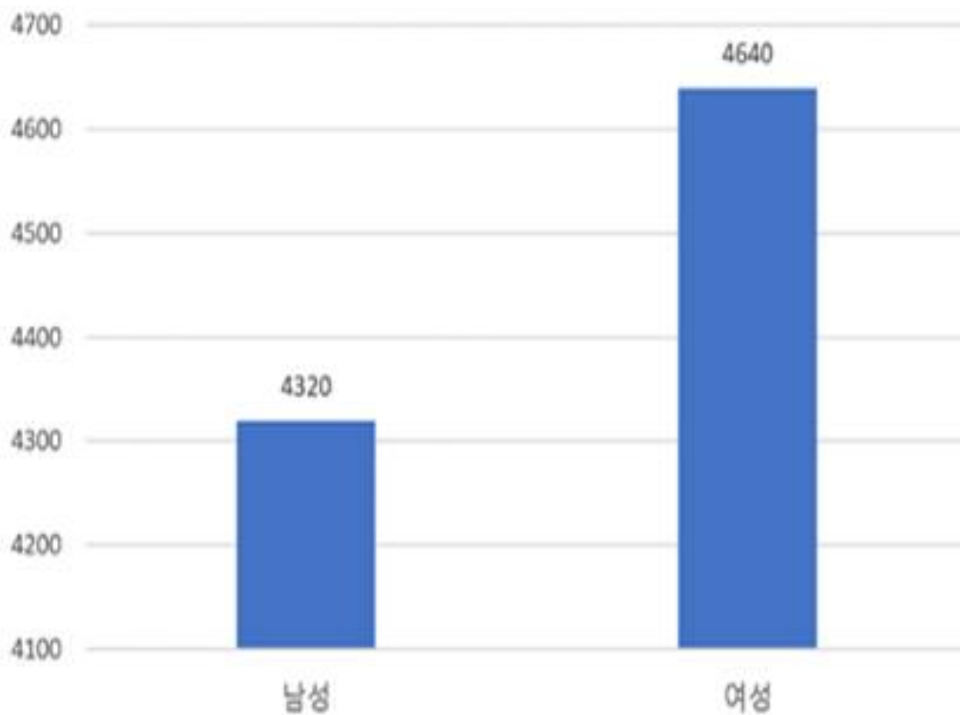
해외 시장의 플러스 사이즈 의류 시장의 전망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외 플러스 사이즈 시장 규모는 유지 및 확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에 따르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패션시장에서 플러스 사이즈 의류의 성장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으며, 일본의 플러스 사이즈 패션 시장 또한 잠재 수요가 높아 보입니다.



세계적 의학학술지 란셋(The Lancet)의 보고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플러스 사이즈 인구는 약 9000만 명(여성 비만 인구 4,64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2030년 약 2억 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단위: 만명)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보고서 '중국 패션시장에 부는 빅사이즈 열풍' (2018.12.19)
 그래프: The Lancet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전체 인구 가운데 플러스 사이즈 인구의 비중은 1992년 13%에서 2015년 30%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플러스 사이즈 인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플러스 사이즈 의류 수요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본 야노 경제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여성의 플러스 사이즈 소매 시장 규모는 1조 엔 규모로 한화 약 9.8조 원 수준입니다.

단위: 억엔



출처: 야노 경제 연구소 보고서 (2018)

(*1) 소비자가격 기준

(*2) 2019년 이후의 경우 예상치

(*3) 각사가 전개하는 Big size, 일레귤러 size의 설정과는 상이하나, L사이즈 이상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 L사이즈 이상의 의류(셔츠, 자켓, 드레스, 스커드, 코트 등)를 대상으로 계산

일본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가장 비만율이 낮은 국가로, 플러스 사이즈 인구 비율이 한국보다 낮지만 한국과 인접한 국가로써 물류 및 문제 발생 시 대응 등에 있어서의 용이성, 온라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 젊은 연령층의 한국 패션 선호도와 함께 국내 플러스 인구 2배 수준의 시장규모 등으로 일본 플러스 사이즈 패션시장은 매력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통계 자료와 업계 트렌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외 패션 시장에서 플러스 사이즈 패션에 대한 고객의 수요는 지속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의 사업은 자사 온라인몰(09women.com), 패션플랫폼 등 온라인 오픈마켓, 오프라인 직영 매장, 해외 온라인 판매(en.09women.com, 09women.cn, tw, jp 및 T-mall 글로벌 등 해

외 온라인 오픈마켓)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국내외 경기침체 및 온라인 오픈마켓의 매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사 매출은 전년 대비 8.8% 감소한 44,649백만원, 영업이익은 15.8% 감소한 7,455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구분	사업 영역	2025년 매출비중
국내 자사 온라인몰	자사 온라인 사이트 09women.com 매출	64.1%
온라인 오픈마켓	지그재그·에이블리 등 온라인 패션 플랫폼 매출 11번가·지마켓·쿠팡 등 오픈마켓 플랫폼 매출	29.6%
오프라인 매장	합정 플래그쉽 스토어 매출	4.5%
해외 사업	자사 해외 쇼핑몰(영어, 일본어, 중국어) 및 해외 오픈 마켓 매출	1.8%

(2) 시장점유율

현재 국내 플러스 사이즈 여성 패션 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플러스 사이즈 의류 시장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시장 점유율을 객관적으로 도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 됩니다.

아울러 플러스 사이즈 여성의류 브랜드 대부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 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 된 각사별 데이터를 취집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플러스 사이즈 여성의류 시장의 시장 점유율 자료는 수치의 객관성 결여 및 비교대상에 대한 모호함에 따라 기재 하지 않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상기 "1. 사업의개요, 가. 목표시장"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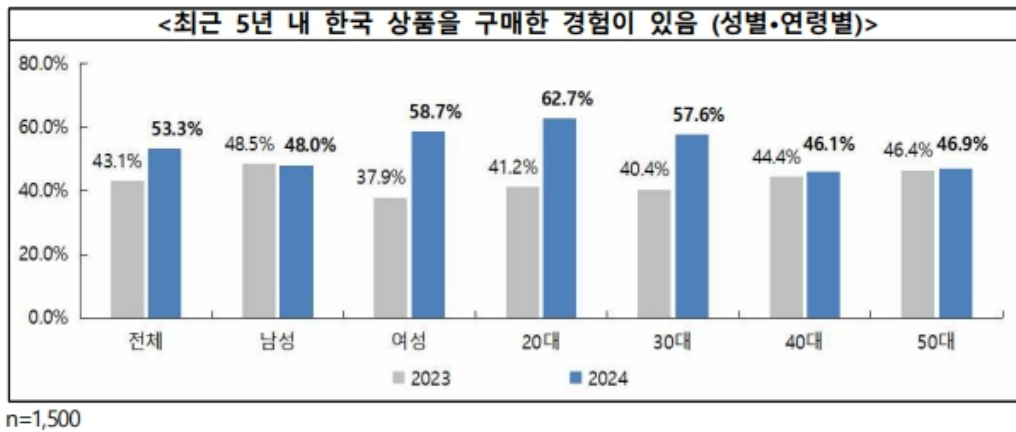
(가) 해외 영업 활성화

당사는 해외 플러스 사이즈 여성 패션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진입하고자 2025년 한해 해외 인접국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및 판매촉진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 대만으로 판매망을 확충하고자 주요 거점 국가에 선제적으로 해외법인을 설립완료 하였습니다.

최근 5년 내 한국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중국의 10대 소비도시의 1,500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근 중국 소비자 소비 트렌드 변화 및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통해 특히 여성소비자와 2030 소비자의 경우 한국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 내 중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한국 상품은 의류가 식품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중국 소비자의 트렌드를 통해서 각국에서 선호하는 디자인

과 맞춤형 플러스사이즈 의류를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중국시장 진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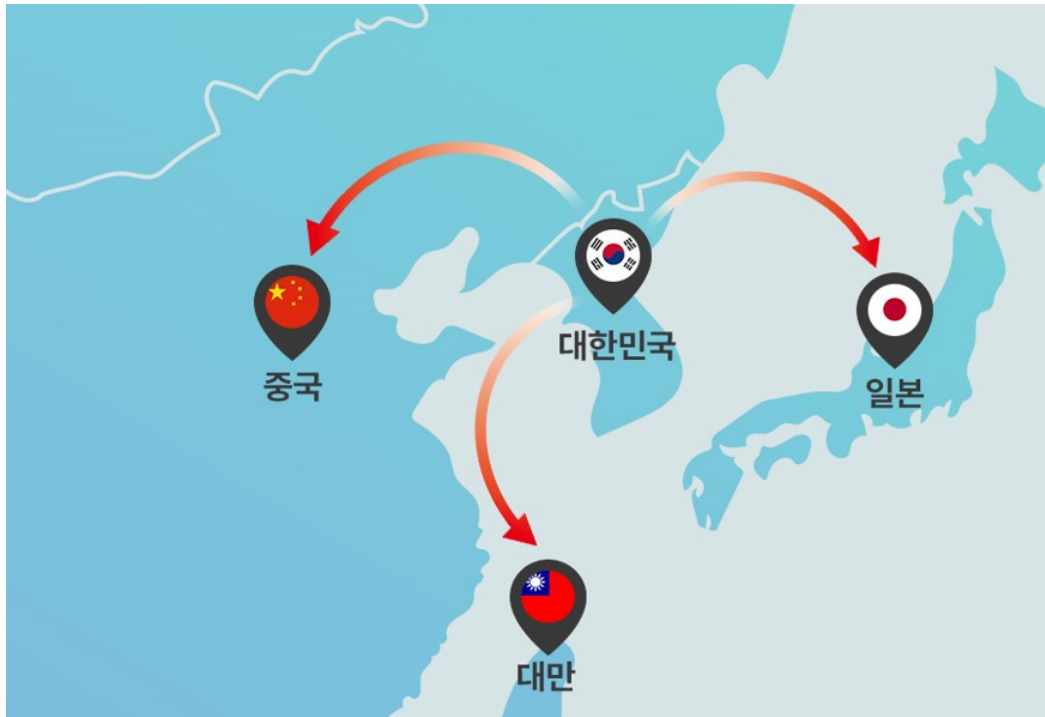
(출처 : 중국 소비트렌드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 '24.7)

당사는 재고의 현지 전진배치를 통해 고객 배송시간을 크게 단축하여, 실시간 대응형 판매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의류 회사와의 다양한 콜라보 사업 요청등을 빠르게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해외향 성장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도 중 일본과 대만 고객에 특화된 DBDB(해외향 판매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후 성공적으로 런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만과 일본 고객들이 편리하게 당사의 의류를 구입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2024년 중 설립된 3개국가의 해외법인들 자체적인 마케팅/홍보 활동을 통해 현지 고객유입자수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의 대표적인 온라인쇼핑몰 입점 또는 최적의 입지분석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6년 중으로 주요 입지에 매장을 검토중에 있으며, 현지 고객에 빠른 상품 배송과 팝업스토어 진행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마련하여 현지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품을 공급하여 빠르게 정착할 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플러스사이즈 패션사업을 넘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확장(M&A 진행 등)하여 고객들에게 연계된 만족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으며, 타사와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 향유할 수 있도록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해외법인 설립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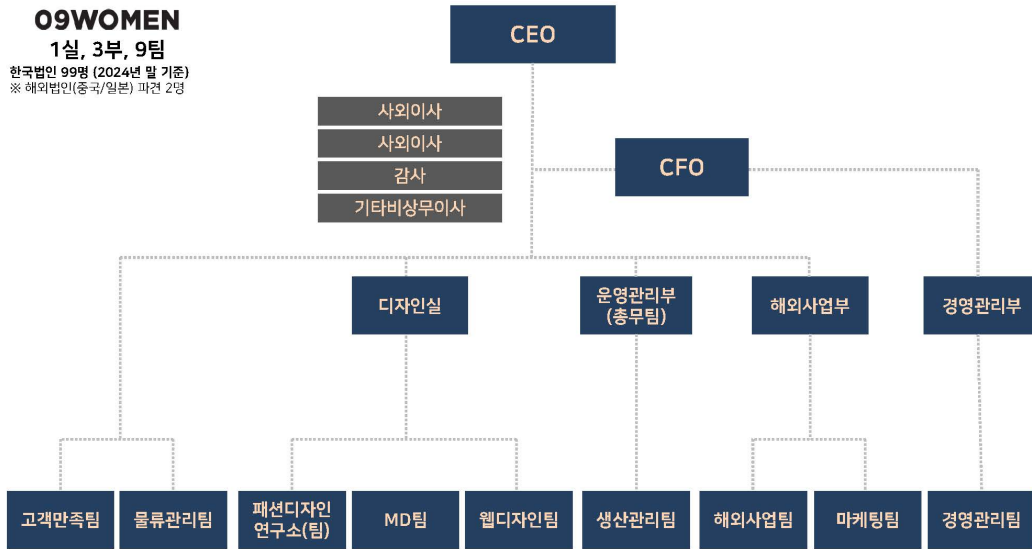


(나) 사업포트폴리오 확대 이행

당사는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 하여 한단계 성장을 하기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성장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O9WOMEN
 1실, 3부, 9팀
 한국법인 99명 (2024년 말 기준)
 ※ 해외법인(중국/일본) 파견 2명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1조 (상호)</p> <p>당 회사는 "주식회사 공구우먼"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O9women Co., Ltd." (약호 O9WOMEN)라 표기한다.</p>	<p>제1조 (상호)</p> <p>당 회사는 "주식회사 나인앤컴퍼니"라 한다. 영문으로는 "Nine & Company Inc."라 표기한다. 다만, 대외적 약호로 "Nine & Co."를 사용할 수 있다.</p>	<p>사명 변경을 통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재정립 및 사업 다각화 방향성 선제적 반영.</p> <p>로고는 "IX & Co."를 사용 예정으로, 이는 로마숫자 IX를 활용한 글로벌 감성브랜딩 전략화 예정이며, 최상위 글로벌 브랜드사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코자 함.</p>

<p>제2조 (목적)</p> <p>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류 도·소매, 제조업 2. 전자상거래업 3. 무역업 4. 잡화업 5. 부동산 임대업 6. 식품수입업 및 판매업 7.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및 판매업 8. 의리기, 화장품 수입업 및 판매업 9.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10. 각 호에 관련 된 유통업 및 물류관련 사업 11. 각 호에 관련 수출입업 및 수입물품 판매업 12.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p>제2조 (목적)</p> <p>당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류, 패션잡화, 액세서리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2. 전자상거래업, <u>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u> 3. 무역업 4. 잡화업 5. 부동산임대업 6. 식품수입업 및 판매업 7.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판매업 8. 의리기, 화장품 수입업 및 판매업 9. <u>플랫폼 개발 및 운영업</u> 10. 어플리케이션, <u>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개발, 공급 및 운영업</u> 11. <u>인공지능(AI) 기반 패션·커머스 기술의 개발, 공급 및 서비스업</u> 12. <u>데이터베이스구축, 데이터 처리 및 정보 서비스업</u> 13. <u>브랜드,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개발, 취득, 관리, 사용허락, 양도 및 관련사업</u> 14. <u>브랜드 라이선싱 및 브랜드 사업화 관련 사업</u> 15. <u>패션잡화의 제조, 도·소매, 수출입 및 유통업</u> 16. <u>자회사, 관계회사 및 기타 회사의 설립, 출자, 지분취득 및 관리업</u> 17. <u>국내외회사, 조합, 펀드, 프로젝트 및 자산에 대한 투자업</u> 18. <u>투자자 회사의 설립 및 운영, 국내외 유가증권 및 지분 투자업</u> 19. <u>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사업개발 및 경영컨설팅업</u> 20. 각 호에 관련된 유통업 및 물류관련 사업 21. 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수입물품 판매업 22.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p>디지털 플랫폼·AI·글로벌 패션잡화 사업 확장 및 투자자 회사(유한회사) 설립을 통한 다각적 투자 활동 근거 마련</p>
<p>제4조 (공고방법)</p> <p>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09women.net)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 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제4조 (공고방법)</p> <p>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ixnc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사명 및 브랜드 변경에 따라 공식 도메인을 www.ixnco.com 으로 변경</p>
<p>제11조 (주식매수 선택권)</p> <p>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p>	<p>제11조 (주식매수 선택권)</p> <p>전 임직원(정규직 및 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부여 대상, 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조건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p>	<p>전 임직원을 스톡옵션 부여 대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인재 유치 및 임직원 동기 부여 강화. 세부 부여 기준은 이사회 규정으로 위임하여 운영상 유연성 확보</p>

<p>제17조 (전환사채 발행)</p> <p>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환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제17조 (전환사채 발행)</p> <p>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환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류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향후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선제적 발행한도 변경을 통한 정관 정비</p>
<p>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타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류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타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전환사채 한도 상황과 상대적 균형을 맞추고 향후 다양한 형태의 사채 발행에 대비하여 선제적 유연성 확보. CB·BW 한도의 불일치 해소</p>
<p>제32조 (이사의 수)</p> <p>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2조 (이사의 수)</p> <p>당 회사의 이사는 7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사업구조 고도화시 이사 규모 확대 필요에 따른 정관 정비</p>
<p>제 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p> <p>(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p>	<p>제 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p> <p>(1) 이사의 보수한도는 연간 총액 금 20억 원 이내로 한다. 다만,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 이사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본 보수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상법 제388조에 따른 정관 정비</p>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6.05.13. 부터 개정 시행한다.	시행시기 추가
-----	---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기운	1976-01-31	사내이사	-	임원	이사회
민은기	1982-05-25	사내이사	-	-	이사회
김익희	1988-08-20	사내이사	-	-	이사회
진광용	1991-03-25	사내이사	-	-	이사회
도윤상	1975-09-20	사외이사	-	-	이사회
이병두	1956-02-29	사외이사	-	-	이사회
박수중	1975-05-23	사외이사	-	-	이사회
이상훈	1969-07-22	기타비상무이사	-	-	이사회
김도훈	1983-09-27	기타비상무이사	-	-	이사회
박치욱	1978-11-28	기타비상무이사	-	-	이사회
총 (10)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기간	내 용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기운	現 씨씨지인베스트먼트아시아(주) 대표이사	前 前 前	씨지에스씨아이엠비증권(주) IB부문 아시아 대표 씨아이엠비증권(주) IB부문 대표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주식부문장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
민은기	現 AMD파트너스(주) 대표이사	前 現	한양증권(주) CIC대표 AMD파트너스(주) 대표이사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
김익희	現 (주)엘링크 대표이사	現 現	(주)지에프리테일 대표이사 (주)엘링크 대표이사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 경제학과 졸업	-
진광용	現 (주)엘링크 총괄사업본부장	現 現	(주)지에프리테일 브랜드사업총괄 (주)엘링크 총괄사업본부장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도윤상	現 리핀코트코리아(주) 대표이사	前 前 現	한국엑센츄어(주) (Accenture) 한국올리버와이먼(주) (Olliver Wyman) 리핀코트코리아(주) (Lippincott Korea) 대표이사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

이병두	現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	前 前 現	삼성 KPMG 부회장 딜로이트컨설팅 부회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정치학 박사	-
박수종	現 대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	現 前 前	대주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TAX 본부장 한울회계법인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
이상훈	現 (주)에스엘엠앤씨 대표이사	現	(주)에스엘엠앤씨 대표이사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졸업	-
김도훈	現 (주)사이렉스페이 대표이사	現 現	(주)사이렉스페이 대표이사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개발원 디지털전자금융 이사 광운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졸업	-
박치욱	前 아르주정당 대표이사	前	아르주정당 대표이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기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민은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익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진광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도윤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병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수종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상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도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치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p>[사외이사 후보자 도윤상]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향후 성장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p> <p>[사외이사 후보자 이병두] 사외이사로서 오랜기간동안 사회 유수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p> <p>[사외이사 후보자 박수종] 본 박수종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오랜기간 동안 공인회계사로서 근무해왔으며, 회계 및 재무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p>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이기운, 민은기, 김익희, 진광용]

각 후보자는 회사의 사업 구조와 운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실행력 있는 전략 추진,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합니다. 또한, 금융, 투자, 패션, 유통에 대한 뛰어난 역량과 글로벌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도윤상, 이병두, 박수종]

각 후보자는 독립적인 시각과 균형 있는 판단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경영 전반에 대한 조언과 점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이상훈, 김도훈, 박치욱]

후보자는 기타비상무이사로서 그 동안의 회사를 경영하면서 쌓은 노하우 및 IT전문가로 근무한 경험(김도훈)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사회 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4 월 28 일

보고자

이 기 문

(서명 또는 날인)



(주)공구우먼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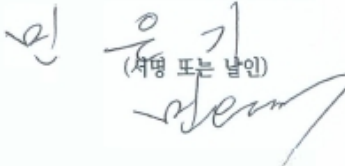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4 월 28 일

보고자 
(서명 또는 날인)

(주)공구우먼 귀중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 3항 제 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항 제 3호부터 제 5호까지의 사항

2026년 4월 28일

보고자 김익희 (서명 또는 인장)


(주)공구우먼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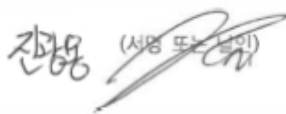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년 4월 28일

보고자  (서명 또는 날인)

(주)공구우먼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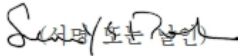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4 월 28 일

보고자 도윤상 

(주)공구우먼 귀중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4 월 28 일

보고자 이 병 두

(서명 또는 날인)



(주)공구우먼 귀중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4 월 27 일

보고자 박 수 중



(주)공구우먼 귀중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4 월 28 일

보고자 이상훈 (서명 또는 날인) 

(주)공구우먼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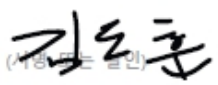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4 월 28 일

보고자 김도훈 
(서명) 또는 (인)

㈜공구우먼 귀중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년 4월 28일

보고자 박치욱 (서명본인)

㈜공구우면 귀중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태우	1975-05-28	-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태우	現 법무법인 올림 변호사	2016~現 2022~現	법무법인 올림 파트너 변호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태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주요 법률 및 내부통제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변호사로서 체득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와 내부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며 회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책임 및 준법·윤리경영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감사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2.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026년 4월 28일

보고자 김 태 우



㈜공구우먼 귀중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0명 (3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000,000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명 (2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94,900,000원
최고한도액	1,000,000,000원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5호 의안] 임원퇴직금지규정 개정의 건

가.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지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적용대상의 구체화 및 지급체계 정비

조항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제2조 (임원의 정의 및 적용범위)	<p>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를 말한다.</p> <p>② 1항에 의한 임원이라도 퇴직금이 없는 조건의 별도 연봉계약을 한 임원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p>	<p>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대표이사(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감사) 및 미등기임원(이사회 결의 또는 내부 인사발령으로 임원 직위 부여받고 경영 참여하는 자)을 말한다.</p> <p>② 퇴직금 없는 조건의 별도 연봉계약 임원 또는 외부 비상근고문 등은 적용 제외한다.</p>										
제4조 (퇴직금의 계산)	<p>① 임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 × 재직년수] 한 금액으로 한다.</p> <p>가. 퇴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 = [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총급여 / 12](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수로 계산한 해당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p>	<p>① 임원의 퇴직금은 [월평균보수 × 재직연수 × 지급배수]한 금액으로 한다.</p> <p>가. 퇴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 = [퇴직 전 12개월 기본급+경영성과급(연금전환분 포함) 총액의 1/12](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수로 계산한 해당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p> <p>다. 지급배수</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구분</td> <td>대표이사 (사장)</td> <td>부사장</td> <td>전무이사 ~상무이사</td> <td>이사</td> </tr> <tr> <td>지급배수</td> <td>3.0</td> <td>2.5</td> <td>2.0</td> <td>1.5</td> </tr> </table>	구분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지급배수	3.0	2.5	2.0	1.5
구분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지급배수	3.0	2.5	2.0	1.5								

제7조 [신설조항]	-	제7조 (경영성과급 등의 퇴직연금 전환 및 불입) [신설] ① 회사는 임원의 선택에 따라 지급 되는 경영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전환하여 불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입액은 [별표1] 직위별 적립률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회계연도 내에 불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퇴직연금 전환을 희망하는 임원은 당해연도 경영성과급이 확정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회사는 제2항의 한도내에서 해당 임원의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불입한다. ④ 본 조에 따라 적립된 부담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등 관련 법령 및 퇴직연금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제7조 (규정의 개폐)	제7조 (규정의 개폐)	제8조 (규정의 개폐)										
부칙 (시행일·경과조치)	-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 3 조 (산정기준) 임원 퇴직금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합산 산정한다. 1.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 : 1배수 적용 2. 본 규정의 시행일 이후 : 제4조 지급배수 적용										
별표 1 [신설]	-	<p>※ 임원 경영성과급 퇴직연금 적립률 한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 직위</th> <th>적립률 한도</th> </tr> </thead> <tbody> <tr> <td>대표이사(사장)</td> <td rowspan="2">최대 40% 이내</td> </tr> <tr> <td>부사장</td> </tr> <tr> <td>전무이사</td> <td rowspan="2">최대 30% 이내</td> </tr> <tr> <td>상무이사</td> </tr> <tr> <td>이사, 감사</td> <td>최대 20% 이내</td> </tr> </tbody> </table>	대상 직위	적립률 한도	대표이사(사장)	최대 40% 이내	부사장	전무이사	최대 30% 이내	상무이사	이사, 감사	최대 20% 이내
대상 직위	적립률 한도											
대표이사(사장)	최대 40% 이내											
부사장												
전무이사	최대 30% 이내											
상무이사												
이사, 감사	최대 20% 이내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이익증대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의 장기 간 근속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인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하고자 함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1)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1)
민은기	사내이사	이사	보통주	100,000주
김익희	사내이사	이사	보통주	100,000주
진광용	사내이사	이사	보통주	100,000주
신현구	사내이사	CFO	보통주	100,000주
총(4)명	-	-	-	총(400,000)주

(*1) 단,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자 및 주식수는 추후 임시주주총회 전에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시 정정공시를 통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보통주 신주발행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 / 400,000 주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p>(1) 행사가격 산정방법(*) 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행사가격은 부여일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 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합니다.</p> <p>(2) 행사기간 부여일로 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릅니다.</p>	-
기타 조건의 개요	<p>(1) 부여일 및 결의요건 가. 부여일 : 임시주주총회일 (2026.05.13 예정) 나. 결의요건 : 주주총회 특별결의</p> <p>(2)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합병·회사분할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당사 내부규정에 의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p> <p>(3) 중도퇴임시 조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부여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부여가 취소될 수 있다.</p> <p>(4)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관한 사항 - 정관 제11조의 6항</p> <p>(5) 기타 상기 내용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중요한 사항은 회사의 이사회가 결정한다.</p>	-

(*1) 행사가격은 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시주주총회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되므로, 행사가격은 임시주주총회일에 결정 됩니다.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1)	잔여 주식수(*2)
22,653,850주	발행주식 총수의 15%	보통주	3,398,077주	3,213,968주

(*1)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내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부여가능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로 산정한 주식수입니다.

(*2) 잔여 주식수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주주총회 결의로 설정된 부여가능한 한도(3,398,077주)에서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수(최소분 제외) 184,109주를 차감한 수량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26년	2026.05.13	4명	보통주	400,000주	-	-	400,000주
2025년	2025.03.06	3명	보통주	176,993주	-	-	176,993주
2023년	2023.02.20	3명	보통주	7,116주	-	-	7,116주
계		총 10 명		총 584,109주	-	-	총 584,109주

(*1) 단,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자 및 주식수는 추후 임시주주총회 전에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시 정정공시를 통해서 안내하겠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 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5월 3일(일) 09시 ~ 2026년 5월 12일(화) 17시까지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